

온포럼(ON-FORUM)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단체의 명칭은 “온포럼”(이하 “본 단체”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단체는 인간·사회·철학·과학기술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와 교류를 바탕으로, 지식의 실천적 활용과 시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며,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지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·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인간·사회·철학·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및 실천적 대안 모색
2. 온·오프라인 소통 모임과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삶의 경험·지혜·문화 교류 활성화
3. 지역사회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적 교류 사업 추진

제3조(사무소)

- ①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내에 둔다.
- ② 본 단체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정을 통해 국내 타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국내외에 지사(지부)를 둘 수 있다.

제2장 사업

제4조(사업)
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인간·사회·철학·과학기술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
2. 연구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
3. 세미나·포럼·강연·토론회 개최
4. 출판·영상·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
5. 교육 및 공익적 지식 확산 활동
6. 국내외 단체 및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
7. 사람·지역·세대 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한 시민 커뮤니티 및 소통 광장 운영
8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영리 사업

제5조(비영리성)

- ① 본 단체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,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.
- ② 본 단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수익사업의 제한)

- ① 본 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- ② 발생한 수입은 전액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3장 회원

제7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- ① 본 단체의 회원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, 정회원·일반회원·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② 정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자로서, 창립발기인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가 승인한 자로 한다. 총회의 출석 권한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.
- ③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학술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고 소식을 제공받는 자로 하되, 총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- ④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·물질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, 총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지며, 소정의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③ 회원의 회비 기준 및 납부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징계·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 2. 본 단체의 연구 내용 및 성과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무단 도용한 때
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 및 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4장 임원 및 기구

제10조(임원의 구성)

본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자 1인
2. 감사 1인 이상

제11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
- ① 대표자와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간 협의 및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.
- ② 임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,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대표자의 권한)

- ① 대표자는 본 단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단체 운영 총괄 및 총회 의장
 - 2. 사업 계획 및 집행 관리
 - 3. 대외 협력 및 대표 활동
 - 4.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위촉
 - 5.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- ② 다만 중요한 재정 집행 및 정관상 주요 사항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4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,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단체의 효율적인 실무 운영 및 상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자가 위촉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대표자가 위원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집행, 예·결산안의 사전 심의, 회원 가입 및 징계 심사,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실무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 명부로 관리한다.

제5장 연구조직 및 지식재산권

제16조(연구조직 및 연구원)

- ① 본 단체는 목적사업인 학술 및 철학 연구의 전문성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 및 수석연구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연구 방향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17조(연구 성과의 저작권 및 귀속)

- ① 본 단체의 명의 또는 지원 아래 수행된 공식 연구 성과, 출판물,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권은 본 단체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구성원이 본 단체의 자산이나 명칭을 바탕으로 개인 명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경우, 본 단체는 이를 공익적 목적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6장 회의 및 의결

제18조(총회)

- 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자가 소집한다.
-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,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본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전자적 공지수단을 통해 공지한다.

제19조(의결 정족수)

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위임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20조(비대면 회의 및 서면 결의)

본 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직접 대면 출석 외에 서면,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및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최 및 의결할 수 있으며, 이는 직접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

제21조(재정 및 기부금 관리)

-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, 후원금, 목적사업 관련 수입 및 기타 적법한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본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한다.
- ③ 후원금 및 기부금은 오직 본 단체의 공익적 목적사업에만 사용되며, 후원자는 재정적 기여를 이유로 본 단체의 연구 방향, 인사 및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④ 본 단체의 재정 및 회계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며,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한다.

제22조(회계연도)
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8장 해산 및 변경

제23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

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
제24조(정관변경)
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립총회 참석자 명부)

창립총회 참석자 및 의결권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따른다.

2026년 5 월 30 일

단체명: 온포럼 (인)

대표자: 문경수 (인)